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우수 물류신기술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 심사 기준, 기술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발주자 보상제도 도입 관련 규정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절차 개편(제2조, 제9조~제12조)

-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기술심사·현장심사에서 현장실사 후 종합 심사를 실시하는 평가체계로 개편

나. 물류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 보상제도 도입(제21조2)

- 발주자의 물류신기술 제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활용 장려금제와 성공불제 도입

다. 물류신기술 분류체계 개편(별표1)

- 첨단기술 반영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행 8개 분야를 대분류(3개), 중분류(8), 소분류(40) 등으로 신기술 분류체계 개선

라. 심사기준 개편(별지 제3조 서식)

- 평가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신규성(20), 진보성(20), 안전성(10), 경제성(10), 적용성(20), 보급성(10) 등에 대한 세부 배점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청기술등”을 “신청기술”로, “물류신기술등”을 “물류신기술”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기술등”을 “신청기술”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현장실사”란 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합심사”란 신청기술이 제9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명칭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심사 등”을 “신기술의 지정 및 심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3조제2항의제1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3조제2항의제3호 중 “현장심사”를 “현장실사”로 한다.

제3조제2항의 제4호 중 “기술심사평가서”를 “현장실사 의견서”로 “현장심사평가서”를 “종합심사 평가서”로 한다.

제3조제3항의제1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의제1호를 삭제하고 가.에서 라.를 1.에서 4.로 한다.

제9조제1항의제2호를 삭제하고 가.에서 나.를 5.에서 6.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0조 명칭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를 “종합심사”로 “기술심사위원회(1차)와 현장심사위원회(2차)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명칭을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하고 제1항의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제10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현장실

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기술심사”에서 “현장실사”로 한다.

제12조의 명칭을 “현장심사”에서 “종합심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종합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5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2조 제6항 중 “현장심사”를 “종합심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제4항을 제1항에서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심사”를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심사”를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로 한다.

제21조의 명칭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을 “신기술에 대한 지원”로 한다.

제21조의 중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신기술”로 한다.

제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기술 기술사업화) 신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이 적용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제22조 중 “2020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 서식에 “기술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위원회”로 한다.

별지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송	운송	고속·대량 운송시스템기술	고속화차, 고속화물철도 수송시스템, Double Stack/Multi Trailer 등
		연계·복합 운송기술	Trailer On Flat Car(TOFC), 피기백(piggy-back), Bi-modal System, Swapbody, 열차페리연계 궤간 가변 열차 등
		운송 고도화 기술	무진동운송, 수소 수송 시스템 등
		무인 운송	상품 자동 측정 기술, 인공지능 기반 적재 효율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기반 라스트 마일 경로 최적화 기술, 열차 무인 운송·시스템 등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저비용 냉동·냉장 차량 및 화차, 다온도대역 동시 배송 차량 및 화차 등
거점물류인프라	보관	보관시설 기술	보관 시설 바닥 구축 등
		보관 장비 기술	초고층 컨테이너 자동물류 창고 등
		보관 고도화 기술	자동 운습도관리등
		정렬 시스템	택배 화물 고속 자동정렬
		에너지	IoT/AI 기반 에너지 절감 콜드체인,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개발, 신선물류창고, 향온/향습/압력 제어 등
	하역	상·하역 기술	Sliding 방식 컨테이너 환적시스템 개발, 지능형 항만 하역장비 등
		이송기술	자동 컨베이어, 자동운행궤도 수송 시스템 등
		분류 기술	고속 자동분류기, Cross Docking System 등
		상·하차 자동화	물류 센터 내 비규격센싱 및 피킹등
		피킹	고속 상차화물분류기 및 랙운반로봇, 피킹을위한 로봇 암 기술 등
	포장	컨테이너 관리	IoT 기반 실시간 화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포장 /용기 기술	회수용기, 다목적 컨테이너 등
		유닛 로드 기술	일관 Palletization 등
		콜드체인 용기	배송용 보냉장치 등
		완충제	포장재 래핑재활용 등
물류관리	정보화	단위 기능별 정보화기술	RFID기반 거점 별 위치추적, RTLS기반 거점 내 장비/화물 위치추적 등
		연계통합형 정보화기술	화물추적/모니터링, 물류 OD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운송네트워크 최적화, 보관·불출 효율화, 물류시설입지 분석, 물류수요분석, 최적화 및 의사결정지원, 운송관리(TMS), 창고관리(WMS) 및 재고관리, 물류서비스 품질관리 등
		AR 기반 물류관리	물류계획/프로세스 실행 및 운동 기능, AR기반 물류창고 운용,스마트 운송, 지능형 라스트 마일 등
		물류 빅데이터 분석	물류능력 최적화, 위험감소, 신규 물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운송경로 최적화, 스마트 예측, 예측 배송, 공급망 위험관리) 등
		센서기반 물류 가상현실	복잡, 수동적 물류과정에서 센서 정보를 기반한 물류 운영의 규격화 등
		추적 시스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물류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활용 등
	표준화	물류 표준화 기술	화물 입·출고 실시간 확인, RCM(Remote Container Monitoring) 기술 등
		물류 표준화 기술	물류 기능별 시설·장비 표준화, 데이터 및 코드체계 표준화, 물류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포장 표준 시스템	포장 표준화 기준 및 제품 분실 방지를 위한 코드 개발, 물류IT 융합을 위한 플랫폼 또는 아키텍처, 서비스 모델 개발 등
보안/안전	물류 안전/보안기술	물류시설·장비 안전 및 재해대책, 물류시설·장비 데이터 및 화물 보안 등	
	사고 예방	작업자 시선추적을 통한 위험 회피 등	
	충돌방지	작업자간 지게차간 충돌 방지 등	
	패턴 파악및 예지	RTLS/ RFID/ 센싱 카메라 장착 스마트 지게차 개발 등	
	위험 상황 인식	IoT 센서 기반 작업자 및 이동차량 위치 및 상태 파악 등	
	로봇	물류 창고용 협업 로봇 개발 등	
기타물류	작업 보조	물류 창고용 협업 로봇 개발 등	
	기타물류기술	웨어러블 로봇, 작업자 보조 장비- 초경량 보호장비 개발 등	
	환경관리 시스템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물류데이터 인식 및 전송, 물류시설·장비용 연료전지 활용 등	
에너지 절감	벌크화물먼지 발생 방지 시스템 개발, 친환경 아적장 개발 등		
에너지 절감	물류터미널 내 태양광 이용 등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사 의견서

(앞쪽)

현장실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생산) 여부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설계도 및 사용설명서)와의 일치여부

실사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종합심사 평가서(지정신청)

(앞쪽)

종합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의견을 작성

가. 신규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개발·개량 정도	10	
차별성 및 혁신성	10	

나. 진보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성능·품질향상	10	
시공기간 단축	5	
첨단기술성	5	

* 녹색인증기술, 산업신기술, 국가 R&D 결과물(성공판정)은 첨단기술성에 5점 부여

다. 안전성(1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기술공학적 안전성	5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5	

라. 경제성(1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설계·시공비 절감	5	
유지관리비 절감	5	

마. 현장적용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시공성	10	
안전성	5	
유지관리성	5	

바. 보급활용성(20)

검토항목	점수	검토의견
보급성	10	
활용성	10	

계	100	<input type="checkbox"/> 인정(7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	-----	--

3. 물류신기술 지정의 인정

물류신기술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참고> 종합심사 세부심사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규성 (20)	개량· 개발정도 (10)	해당공정의 주요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기술임	10
		해당공정의 주요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8~9
		해당공정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임	6~7
		해당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과 유사함	4~5
		해당공정의 성능 개선이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한 기술임	1~3
	기존 기술과 차별성 (1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10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8~9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	6~7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4~5
		기술의 차별성(공법·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3
진보성 (20)	성능· 품질향상 (10)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임	10
		기존기술 대비 품질이 크게 향상된 기술임	8~9
		기존기술 대비 품질향상이 보통인 기술임	6~7
		품질수준이 기존기술과 유사한 수준임	4~5
		품질수준이 기존기술보다 미흡함	1~3
	시공기간 단축 (5)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보통인 기술임	3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대비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한 기술임	1
	첨단 기술성 (5)	녹색인증기술, 산업신기술, 국가 R&D 결과물(성공판정)에 해당하거나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높은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보통인 기술임	3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낮은 기술임	2
		기존기술 대비 첨단기술성이 매우 낮은 기술임	1
안전성 (10)	기술 공학적 안전성 (5)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음	5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4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소 존재하나 균질한 품질 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음	3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제시된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2
		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크며 기술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제시된 품질 등을 재현 할 확률이 희박함	1
	시험 성적 등 이용자 안 전성 (5)	시험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탁월함	5
		시험성적이 우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양호함	4
		시험성적이 보통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3
		시험성적이 다소 미흡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도 미흡함	2
		시험성적이 없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거의 없음	1
경제성 (10)	설계·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 입 등) 절감 효과가 탁월함	5

	시공비 절감 (5)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효과가 우수함	4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효과가 보통임	3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효과가 미진함	2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음	1	
	유지 관리비 절감 (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높음	5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높음	4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보통임	3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낮음	2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미흡함	1	
	현장 적용성 (20)	시공성 (10)	기존기술 해당 공정 전반에 대한 시공성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10
기존기술 대비 해당 기술의 시공성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8~9	
기존기술보다 해당 기술의 시공성이 일부 개선된 기술임			6~7	
기존기술보과시공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4~5	
기존기술보다 시공성이 미흡함			1~3	
안정성 (5)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일부 향상된 기술임	3	
		기존기술과 안전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보다 안전성이 미흡함	1	
유지관리 성 (5)		기존기술 대비 유지 관리시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5	
		기존기술 대비 유지 관리시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이 우수한 기술임	4	
		기존기술 대비 유지 관리시인력 장비 등의 편리성을 일부 개선한 기술임	3	
		기존기술과 유지관리 편리성이 유사한 수준의 기술임	2	
		기존기술보다 유지관리 편리성이 미흡함	1	
보급 활용성 (20)		보급성 (10)	수출 및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중장기 수급 전망이 매우 양호한 기술임	10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수급 전망이 양호한 기술임	8~9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기술임	6~7
			일부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기술임	4~5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이 높아 보급율이 미흡한 기술임	1~3
	활용성 (10)	수출 및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중장기 활용이 매우 양호한 기술임	10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활용이 양호한 기술임	8~9	
		국내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기술임	6~7	
		일부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기술임	4~5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이 높아 활용률이 미흡한 기술임	1~3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종합심사 평가서(연장신청)

(앞쪽)

종합심사 일시	
신청기술 명칭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민원 의견	
민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	

2. 심사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의견을 작성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토의견
활용실적 (4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보급노력	10	
품질검증 (60)	기술수준	15	
	기술개량	15	
	경제성	10	
	시장성	10	
	안전성	10	
계		100	<input type="checkbox"/> 보호기간 연장 인정(4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3. 신청기술의 범위 조정

범위조정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종합심사 활용실적 세부심사기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 활용건수	3이하	4~15	16~60	61~150	151 이상
② 공사비(억원)	3이하	3~25	25~120	120~300	300초과
배점	0~6	7~12	13~18	19~24	25~30

<참고 2> 종합심사 기술보급노력 세부심사기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 홍보실적	3이하	4~5건미만	5~6건미만	6~8건미만	8~10건미만
배점	2	4	6	8	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생 략)</p> <p>1. “<u>우수 물류신기술등</u>”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신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p> <p>2. “<u>신청기술등</u>”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u>우수 물류신기술등의</u> 지정을 신청한 <u>물류신기술등</u>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u>물류신기술등</u>을 말한다.</p> <p>3. “<u>이해관계인</u>”이란 <u>신청기술등</u>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p> <p>4. “<u>기술심사</u>”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u>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u> 또는 <u>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u>(이하 “신청</p>	<p>제2조(현행과 같음)</p> <p>1. “<u>우수 물류신기술등</u>”(이하 “<u>신기술</u>”이라 한다) ----- ----- ----- ----- ----- ----- ----- ----- ----- ----- -----</p> <p>2. “<u>신청기술</u>”이란 ----- -----신기술 -----물 류신기술 ----- ----- --물류신기술-----.</p> <p>3. -----신청기술----- ----- -----</p> <p>4. “<u>현장실사</u>”란 영 제46조의3에 따라 <u>신기술의</u>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u>신기술의</u>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u>현장을</u>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p>

서"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관계기관의 의견 및 영 제46조의3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을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심사"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등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제2장 우수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심사 등
제3조(신청의 접수) ① 영 제46조의3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이하 "지정신청"이라 한다)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심사"란 신청기술이 제9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2장 신기술의 지정 및 심사 등
제3조(신청의 접수) ① _____
물류신기술 _____

-----신기술-----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국 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 서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물류신기술등 (이하 "지정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생략)

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등을 활용한 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

4.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심사평가서 또는 제3호서식의 현장심사평가서의 검토항 목을 기술한 자료

5. ~8. (생략)

③ (생략)

1.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한 물류기술등(이하 "연장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등으로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신청인이 이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이 거부된 신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

② _____

_____ 신기술 _____

1. _____

_____ 신기술 _____

2. (현행과 같음)

3. 현장실사 _____

4. _____ 현장실사 의견서 또는
_____ 종합심사평가서 _____

5.~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_____

_____ 신기술 _____

제4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 신기술 _____

시 제출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생략)

제6조(공고) ①~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연장신청인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및지정기간

제9조(심사기준) ① (생략)

1. 기술심사

가.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발한 기술

나.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다. 안전성: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다. 안전성: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라.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현장심사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 신기술 -----

3.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신기술 -----

제9조(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1. -----

2. -----

3. -----

4. -----

<삭 제>

5. -----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② (생략)

1. 활용실적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
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
까지 해당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
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
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
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
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10조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 ① 진흥원장은 신청
기술등에 대한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
를 위하여 기술심사위원회(1차)와 현
장심사위원회(2차) 등 우수 물류신기
술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기술심사) ① 기술심사는 신청기
술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이해관
계인 의견 제출과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0
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가 별지 제
2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6. -----

② (현행과 같음)

1. 활용실적 : 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
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 : 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10조(신기술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장실사) ① 현장실사는 신청
기술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이해관
계인 의견 제출과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3명
이상 5명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
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
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

② 기술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제11조에 따른 기술심사 후 제10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기술등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현장실사-----
-----.

제12조(종합심사) ① 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종합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기술등에 대한 연장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의 현장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청기술등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와 지정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영문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우

④ (현행과 같음)

⑤ ----- 신기술 -----

⑥ ----- 종합심사-----
-----.

제13조(심사결과의 처리) 삭제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문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신기술-----

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관리) ① 진흥원장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 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산정) 영 제46조의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2.(생략)

제18조(심사수당 등의 지급) ① 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심사에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우수 물류신기술등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진흥원장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영 제46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15조(자료관리) ① ----- 우수 물류신기술등 -----

제17조(기간의 산정) -----
항에 따라 신기술 -----

1.~2.(현행과 같음)

제18조(심사수당 등의 지급) ①-----
-----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 -----

② -----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 -----

제20조(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신기술 -----

신기술 -----

제21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자에 대한 영제46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요청 등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재검토기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기술 -----

-----신기술-----

제21조의2(신기술 기술사업화)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이 적용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제22조(재검토기한) ① -----

-----2024년-----